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박희진 의원외 7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 
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불 임 참 조
4. 검 토 의 견 : 불 임 참 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불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5월 23일

교육사회위원회  
전문위원 안문환

#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 박희진 의원의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감경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경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(안 제6조의 2).

나. 휴양림 시설사용료 감경대상자를 추가함(안 제6조의2 제4호)

## 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감경비율과 대상을 확대·추가하여 휴양림의 관리·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### 주요개정 내용은

- 안 제6조의2중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“100분의 20”에서 “100분의 50”으로 확대하고,
- 안 제6조의2 제4호로 “독립유공자와 그 유족”에 대하여 시설사용료 감경 대상에 추가하였음.

###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장태산자연휴양림의 관리·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경비율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감경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됨.